

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

다빈도 부당청구 사례

[가정방문형 급여]

2025. 12.

1

무자격자가 서비스 제공 후 타인으로 청구

부당사례

○○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A는 자격증 없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 후,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타인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음.

적용
기준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3조(장기요양급여의 종류)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 제11조(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)에 따라,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이며,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·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함.

관련
근거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3조(장기요양급여의 종류)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 제11조(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)
-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2(요양보호사의 직무·자격증의 교부 등)

※ 본 자료에 표기된 '법(시행령·시행규칙)'은 「노인장기요양법(시행령·시행규칙)」, '고시'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를 의미함.

부당사례1

○○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A는 202*.*.*., 202*.*.*. ~ *.*., *.*. ~ *.*., 202*.*.*. ~ *.*., 202*.*.*. ~ 202*.*.*. (총**개월) 기간 동안, 공단에 신고한 근무일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40분을 가졌으나 공단 전산에 미등록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신고하여 해당 기간 동안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음.

부당사례2

대표 겸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A는 202*.*.*. ~ 202*.*.*.(202*.*.*., 202*.*.*., 202*.*.*. 제외, 총**개월) 기간 동안, 근무시간 중 다른 부지에 운영하는 입소 시설의 관리·감독 및 예배참석, 미허용 연차 사용 등으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미충족하였으나,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등록 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음.

부당사례3

○○방문요양기관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기 위하여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따라 인력추가배치 가산 및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, 사회복지사 A는 병가를 적용하여 청구하였으나 병가를 적용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. 해당 월,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청구하여 지급 받음.

적용 기준

- －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실 근무하여 함. 시설장은 근무기간 동안 휴게 시간을 가졌으나, 공단전산에 등록하지 않아 월 기준근무 시간에서 제외함.
- － 고시 제49조(월 기준 근무시간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무시간을 공단에 신고해야 함.
- － 세부사항 제12조(근무인원수 산정방법) 제1항 제1호 바에 의하면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만 근무시간 적용이 되며, 대표자인 사회복지사의 휴가는 근무시간 미적용.

관련 근거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 제1항
-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9
- 「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(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301호(2022.12.28.))
 - － 제48조(인력배치기준), 제49조(월 기준 근무시간), 제50조(근무인원), 제51조(근무인원 수 산정방법), 제54조(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), 제57조(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), 제58조(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)
-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
 - － 제12조(근무인원수 산정방법)

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의 급여관리 기준 위반(방문상담 기준 위반)

부당사례1

○○방문요양기관은 특정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3개월 이상 급여관리 업무를 누락하여, 해당 월에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%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감액 없이, 급여비용을 100% 산정 및 청구하여 지급 받음.

부당사례2

○○방문요양기관은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하는 기관임에도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지 않고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%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감액 없이, 급여비용을 100% 산정 및 청구하여 지급 받음.

부당사례3

○○○○○복지센터는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 급여에 대하여 고시 제57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, 특정 수급자에 대하여 3개월 연속하여 급여관리 업무수행을 누락하는 경우 해당 월에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%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감액 없이, 급여비용을 100% 산정 및 청구하여 지급 받음.

적용
기준

고시 제69조의2(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)에 따라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하는 방문요양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고시 제57조(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) 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, 수급자 수의 50% 미만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특정 수급자에 대하여 3개월 연속하여 급여관리 업무수행을 누락하는 경우, 해당 월에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%를 산정하여야 함.

관련
근거

- 「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
 - － 제69조의2(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), 제57조(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)

부당사례1

요양보호사 A는 수급자 B에게 202*.**.**. ~ 202*.**.**. 기간 동안, 총**회에 걸쳐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동안, 개인사정에 의해 자리 이탈을 하였으며, 그로인해 실제 방문요양 서비스를 회당 30분미만 제공하여 급여비용 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음.

부당사례2

수급자 A의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에, 요양보호사의 개인 발일을 하면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, 사실과 다르게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음.

※ 태그 미전송, 수기 급여제공기록지도 미작성.

부당사례3

○○○복지용구 기관은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에 대하여 최대 15일까지 대여 가격을 산정하고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나, 15일을 초과하여 복지용구(전동침대)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음.

적용 기준

- － 고시 제16조(재가급여 제공시간 등), 제17조(방문요양급여 제공 기준), 제18조(방문요양 급여비용) 등 기준에 따라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 시간은 간호사(또는 치과위생사, 간호조무사)·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,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,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, 1회 최소 30분 이상 제공시 급여비용 산정 가능.
- －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 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,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사실대로 급여제공기록지(RFID포함)에 작성(전송)하고 이를 근거로 제18조(방문요양 급여비용)에 규정한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.
- －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, 수동침대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으나 해당 제품을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하여야 함.

관련 근거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 제1항
- 「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(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7호(2025.2.11.))
 - － 제16조(재가급여 제공시간 등), 제17조(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), 제18조(방문요양 급여비용)
- 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
 - － 제4조(복지용구 급여기준), 제5조(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), 제6조(복지용구 급여비용 산정방법)

부당사례

○○○노인복지센터는 202*.**. ~ 202*.**. 기간 동안, 5등급 수급자 **명에 대하여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업무수행(방문상담 및 업무수행일지 작성 등)을 하지 않아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 할 수 없으나,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음.

적용
기준

프로그램관리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월 1회 이상, 제17조 제6항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월에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.

관련
근거

- 「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
(보건복지부고시 제2022-219호(2022.9.26.))
- － 제17조(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), 제19조(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)